

#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 □ 도입 목적

- ‘제재’ 성격의 금지행위 규제에 앞서 유료방송시장 방송프로그램 제공관련 불공정행위 유형 예시 및 준수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 대상사업자의 경쟁제한 및 시청자 권익 침해행위 자정노력을 유도함과 동시에 향후 금지행위 규제 시 사후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활용

## □ 관련 규정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관련 규정

### 방송법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 시청자의 시청권 등 이익보호 관련 규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 ①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9조(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 □ 기본 전제

- 동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시장에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SO 등 유료방송사업자간의 프로그램 제공 관련 행위에 적용
- 이 때 '프로그램 제공'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

\*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

## □ 가이드라인 내용

### ① 끼워팔기 등을 거래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행위

#### ○ 의 의

-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다른 프로그램 제공 거래와 연계하는 조건으로 해당 프로그램 제공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여
- 프로그램 제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결국 시청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금지될 필요가 있음

## ○ 대상행위

- i)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하여 복수채널사용사업자가 채널 전체 또는 채널별 묶음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거나,
- ii) 상기 행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한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
  
- iii) 단수채널사용사업자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청률 등을 감안하여 중요한 프로그램인 경우, 자기가 지정하는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프로그램 제공 거래와 연계하여 계약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

## ○ 위법성 판단기준

- 방송프로그램 제공시장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끼워팔기 등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시청률, 대체거래선 확보 가능성 등 고려
  
- 통상적 거래관행인지를 고려하되, 통상 거래관행에 해당되어도 끼워팔기 등의 거래로 공정경쟁 및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봄
  
- 끼워팔기 등을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범위반으로 보지 아니함

## 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을 하는 행위

### ○ 의의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자기 단독이 아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하여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중단하거나 프로그램의 수량 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 프로그램 제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결국 시청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금지될 필요가 있음

### ○ 대상행위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자신과 프로그램 제공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거래상대방 사업자에 대하여
  - i)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 ii) 기존에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신규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 iii)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써
- 이 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는 프로그램 제공 시장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되, 특히 동일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쟁제한 및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더 큰 것으로 고려함

## ○ 위법성 판단기준

- 방송프로그램 제공시장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을 당한 사업자는 여러 사업자와의 거래 등이 제한되므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

### **㉓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행위**

## ○ 의의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수량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 거래상대방인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제공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프로그램 제공 경로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하여
- 프로그램 제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결국 시청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금지될 필요가 있음

## ○ 대상행위

- i)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관련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ii)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 또는 중단하거나 채널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 이 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뿐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하고, 특히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동일·유사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일 경우 위법에 해당될 여지가 높음

## ○ 위법성 판단기준

- 방송프로그램 제공시장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이러한 거래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시청률, 대체거래선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함
- 통상적 거래관행인지를 고려하되, 통상 거래관행에 해당되어도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의 거래로 공정경쟁 및 시청자 이익을 저해할 경우 위법한 것으로 봄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범위반으로 보지 아니함

## ④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을 하는 행위

### ○ 의 의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이 되는 거래상대방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 중단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 또는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로써
- 거래상대방인 방송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불이익을 가하거나 제한을 하여
- 프로그램 제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결국 시청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금지될 필요가 있음

### ○ 대상행위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임을 사유로
  - i)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 ii) 기존에 제공하고 있지 않은 신규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 iii)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수량이나 내용을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이 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

## ○ 위법성 판단기준

- 방송프로그램 제공시장을 포함한 유료방송 시장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시청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프로그램 제공 사업자가 프로그램 제공 거부, 거래조건 등을 강요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시청률, 대체거래선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함
- 통상적 거래관행인지를 고려하되, 통상 거래관행에 해당되어도 해당 행위가 공정경쟁 및 시청자 권익 저해 시 위법한 것으로 봄
-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거절 등에 있어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지 않음

## □ 재검토 기한

-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